

● 제32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994)

2024. 9. 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허훈 의원 발의】

의안번호 1994

I. 조례안 개요

1. 발의경위

가. 발 의 자 : 허훈 의원 (찬성 29명)

나. 발의일자 : 2024년 8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의 폐의약품 관련 업무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자원순환 과로 이관된 바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조례」에서 폐의약품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에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련 내용을 삭제함

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중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 ('24. 8. 20. ~ 8. 24.)

(2)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처리 등 전반적인 관리 사무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로 이관됨에 따라 실제 업무 분장과 조례상 당해 내용을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개정(안) 제4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에서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삭제 관련 (안 제 4조 관련)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이하 “동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서 제4조제2항제5호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5.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u>	<u><삭 제></u>
6. ~ 9. (생략)	5. ~ 8.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2) 검토의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 中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한 종류임.
- 이에 더해, 동법 시행령 [별표 4의3]에 따라 '폐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의미함. 즉, '폐의약품'은 '의약품 중 폐기되는 의약품'으로 「폐기물관리법령」 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 (이하 "생략")
-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폐의약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 3.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환경부 사무분장규정(환경부 훈령)」 제42조제15호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하의 생활폐기물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환경부 사무분장규정 (환경부 훈령)

제42조(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포함)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리고 ‘시’에서도 이러한 ‘폐의약품 관리’ 업무의 주무부처(환경부)의 사무분장에 대응하여 ‘폐의약품 관리’ 사무를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로 이관하였음.
- 따라서,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서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사무분장’과 ‘조례상 사무’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존재함.
- 아울러,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불용 의약품 발생방지”를 삭제하더라도 동 조례 제2조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의에 입각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충분히 그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판단됨.
-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유익성을 얻되 오·남용을 방지하는 적정량의 의약품 사용법”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불용 약품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됨.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2조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의 정비 관련 (안 조례 제5조 관련)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더 이상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가 아닌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사업'을 현행 조례 제5조제4호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 제5조제1호에 산재되어 있던 여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p> <p>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p> <p>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p> <p>다.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p>	<p>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p> <p>-----</p> <p>-----</p> <p>-----.</p> <p>1. -----</p> <p>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p> <p>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p> <p>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안전배출 교육</p>

현행	개정 (안)
<p>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 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p> <p>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p> <p>2.·3. (생략)</p> <p>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p> <p>5. ~ 9. (생략)</p>	<p><u><삭 제></u></p> <p><u><삭 제></u></p> <p>2.·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4. ~ 8.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p>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4호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사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제 시의 사무분장과 조례상의 사무 및 조례 관리 주체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아울러, 개정(안)에서 현행조례 제5조제1호 각목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은 그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제5조제1호가목 (사람에 대한 교육), 제5조제1호나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이에 더해, 개정(안) 제5조제1호다목의 경우, 비록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그 자체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등에

대한 관리 사무'는 더 이상 동 조례의 규율 대상이 아님에도, 개정(안)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안전' '배출교육'을 명시한 것은 그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왜냐하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오용' 또는 '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배출'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 조례의 목적인 '의약품의 안전사용 및 환경조성'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집행기관 의견: **원안가결**

문의처
(02-2180-8145)